



미·한재계회의  
미국상공회의소  
워싱턴 DC, NW H가 1615  
2006-2000  
202-463-5461  
[www.uskoreacouncil.org](http://www.uskoreacouncil.org)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4501호  
135-729  
82-2-564-2040  
[www.amchamkorea.org](http://www.amchamkorea.org)

미·한재계회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보고서



U.S. - Korea  
Business Council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미·한재계회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보고서



##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개요

미·한재계회의는 한국과 미국의 재계를 연결하는 최고의 재계 모임입니다. 미·한재계회의는 한국시장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진 미국 기업 중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간의 경제 및 정치적 관계를 증진하고 쌍무교역과 투자를 포괄하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한재계회의의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한재계회의는 워싱턴 정가에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에 관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개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간의 투자와 교역의 발전을 증진시킨다는 사명을 가지고 1953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현재 회원은 약 2,300명, 회원사는 약 1,100개에 달하고 있으며, 상업적, 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의 적극적 개발 및 증진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에 중요한 교역 및 투자 동반자 관계의 확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국내시장접근을 촉진하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시장개념과 사업관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상품과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증진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시민으로서 다양한 기업의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 목 차

인사말_ 미·한재계회의 사무국장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4
서론	6
서비스	10
금융서비스	12
통신과 정보기술	14
농업	16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17
의약	19
화장품	21
투자	23
지적재산권	25
경쟁정책	27
표준 및 기술적 무역장벽	28
정부조달	30
통관	32
원산지 규정	34
노동과 환경	34
미국 비자정책	35
결론	36

## 미·한재계회의의 사무국장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인사말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미국 협상단, 정부 당국자, 미국 의회등에 한-미 FTA 협상에 관해 우리 회원사들이 꼽은 우선과제와 목표를 요약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원사로는 한국시장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미국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본 보고서가 한국정부 당국자, 국회의원, 그리고 국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FTA 협상에 관한 미국 재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미 FTA 체결은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그리고 우리 회원사들이 오래 전부터 소망해왔던 일입니다. 우리는 FTA 협상이 양국 간의 경제적 파트너쉽과 쌍무관계를 보다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미·한재계회의의 윌리엄 로즈(William Rhodes) 위원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웨인 챔리(Wayne Chumley) 회장의 지도력 하에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및 한국 재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FTA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결된 교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설적 노력을 증진해 왔습니다. 2005년 9월,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FTA가 양국에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적시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FTA 협상 개시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양국 정부는 한국의 스크린 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 한국수입 부분재개 등 미결된 이슈의 상당수를 해결했고 자동차와 의약 부문의 쌍무교역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정부가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 요구되는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는 FTA 협상의 개시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간의 FTA 협상을 지지하는 수많은 미국기업과 업계 단체로 구성된 미-한 FTA 비즈니스 연합을 출범시키는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미-한 FTA 비즈니스 연합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포트먼(Portman) 대표와 외교통상부의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간의 FTA 협상 개시를 발표한 2006년 2월 2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한재계회의가 회장을 맡고 있는 미-한 FTA 비즈니스 연합에는 미국 경제 전반을 대변하는 다양한 규모의 160개 이상의 미국기업, 업계 기구 및 협회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계속적으로 커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한 FTA 비즈니스 연합 운영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한 FTA 비즈니스 연합의 활동과 한국정부 및 한국 재계를 향해 다가가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한 FTA 비즈니스 연합은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 미국의회 의원과 한국 국회의원, 한국 재계와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FTA 협상과 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FTA 협상은 2007년 6월로 예정된 미국 무역촉진권한법(US Trade Promotion Authority) 만료와 같은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 간의 경제 및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동북아의 무역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원대한 협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일본의 경제가 여러 해에 걸친 구조적 개혁을 통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의 경제적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욱이, 포괄적 FTA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자유화에 있어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를 위한 회원사들의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본 보고서에 시간과 의견을 내주신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회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FTA 협상에 있어서 미-한 FTA 비즈니스 연합의 원대한 목적과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본 보고서에 식견 높은 의견을 더해 주신 미-한 FTA 비즈니스 연합의 여러 회원사에도 감사 드리고자 합니다.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정부 및 한국정부와 협력할 기회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는 한국 재계가 양국의 기업, 투자자, 소비자에게 최대의 이익과 기회를 제공할 FTA 협상 지원을 위해 우리와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Myron Brilliant)  
미·한재계회의 사무국장  
(President, U.S.-Korea Business Council)



태미 오버비(Tami Overby)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President,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서론

“한-미 FTA는 미국이 지난 15년 동안 체결한 무역 협정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다. 한국만큼 열린 시장과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나라를 찾기란 쉽지 않으며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관점에서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반 세기 넘게 단독한 우방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포트먼(Robert Portman) 대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Form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6년 2월 2일

“오늘 우리는 한-미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출범을 앞두고 있다. 양국 간의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본인은 지금 이 순간이 1953년 한미군사동맹 체결 이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종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6년 2월 2일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Korea)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있어 회원사들의 우선과제와 목표에 관한 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쌍무경제 및 무역관계를 촉진하는 주요 기업 단체로서 폭 넓은 회원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의 시작은 오랫동안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우리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이런 협상을 진행하는데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했던 미결 무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진전시킴에 있어 지도력을 보여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과 체결할 FTA의 협상 범위가 포괄적이며, WTO의 자유무역 체제에 부합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더 나아가 본 FTA는 자동차와 의약 부문의 장기 미결현안에 대한 구체적 서약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한-미 FTA는 양국이 경제적으로 상승효과를 거둘 두 있는 진정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전문가들이 수행한 연구에서 양국 간의 포괄적 FTA가 교역과 투자 증대를 통해 양국의 경제성장 가속화,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등의 이익을 도출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쌍무교역 기준으로 미국의 제7대 무역상대국이며 2005년 기준으로 양국간 교역량은 7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제5대 시장이며 아시아 에서는 미국 서비스 산업의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 상대국이며 한국에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소기업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5,233 개의 미국 중소기업체가 미국의 한국 총수출 중 31%에 달하는 67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sup>1</sup> 이처럼 양국 간에 상당한 규모의 쌍무경제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 있어 NAFTA 이후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입니다.

한-미 쌍무교역관계는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외환위기 후 한국정부가 시행한 폭 넓은 개혁으로 인하여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회원사들은 최근 한국시장에 대규모 장기투자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업도 미국 내 투자와 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FTA는 한국의 추가적인 개혁의 진행을 촉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개선된 시장 접근성과 새로운 투자기회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전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sup>1</sup>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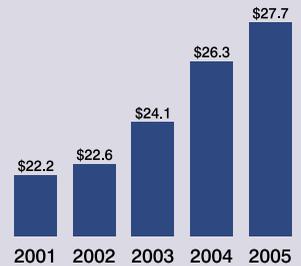
한-미 FTA는 지역 및 다자간 수준에서 무역자유화 노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국에 중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미국을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으며, 도하라운드 협상 비농업 제품 부문 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한-미 FTA는 오늘날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직면한 일부 난제들을 해결하고 폭 넓은 토론을 통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혜택은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FTA는 미국과 한국 간의 중요한 정치 및 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이며 한국 국민은 미국 국민과 더불어 민주주의 발전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좋은 친구입니다. 한 예로, 한국은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 구호기금으로 선뜻 3,000만 달러 기부를 포명한 바 있습니다. FTA는 양국을 더욱 가까운 동반자로 만들어 아태지역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양국 공통의 가치를 증진하게 될 것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내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기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는 160개 이상의 기업과 업계 단체로 구성된 기구로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핵심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미 FTA 비즈니스 연합(U.S. - Korea FTA Business Coalition)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및 한-미 FTA 비즈니스 연합의 목표는 다가오는 FTA 협상에서 미국 재계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본 협정이 포괄적이고 상업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지지하는데 있습니다. 한-미 FTA 비즈니스 연합은 FTA 협상 기간에 걸쳐 관심 있는 미국 기업과 미국 FTA 협상단 간의 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및 한-미 FTA 비즈니스 연합은 미국 협상단과의 협의를 통해 협상의 결과물이 될 최종협정에 논의된 목적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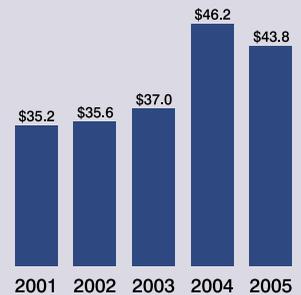
한-미 FTA는 야심 찬 계획이며 여러 가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현재 무역협약 체결에 대한 양국의 상황이 포함되며 일부 민감한 부문들도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협상단의 노력에 난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난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한-미 FTA 비즈니스 연합과 함께 미국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을 상대로 한-미 FTA가 양국에 가져다 주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이해시키는데 힘쓸 것입니다.

미국의 대 한국 수출액  
(단위: 10억 달러)



출처: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미국의 대 한국 수입액  
(단위: 10억 달러)



출처: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2005년 부문별  
미국의 대 한국 수출액  
(단위: 10억 달러)



출처: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한-미 FTA의 잠재적 경제효과

- ◆ 미국경제의 순 복지향상 효과(Net welfare gains) 최대 89억 달러(미국 GDP의 0.13%)
- ◆ 한국경제의 순 복지향상 효과(Net welfare gains) 최대 109억 달러(한국 GDP의 2.41%)
- ◆ 미국의 대 한국 수출액 최대 49% 증가
- ◆ 미국의 대 한국 수입액 최대 30% 증가

출처: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IE), 2004년

한-미 FTA 협상 목표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한-미 FTA의 성공적인 협상에 있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목표를 파악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 회원사와 보다 저변이 넓은 한-미 FTA 비즈니스 연합 회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핵심 부문과 각 부문을 (Cross-sectoral)포괄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서비스
- ◆ 금융서비스
- ◆ 통신 및 정보기술
- ◆ 농업
- ◆ 자동차
- ◆ 의약
- ◆ 화장품
- ◆ 투자
- ◆ 지적재산권(IPR)
- ◆ 경쟁정책
- ◆ 표준 및 기술적 무역장벽
- ◆ 정부조달
- ◆ 통관
- ◆ 원산지 규정
- ◆ 노동 및 환경

한-미 FTA는 또한 위에 명시된 부문에서 중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사안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이하에 기재된 장(챕터: chapters)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해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정부가 앞서 체결한 타 FTA에서 설정한 동일한 수준의 높은 기준에 부합할 것을 기대합니다.

- ◆ 분쟁해결
- ◆ 내국민대우
- ◆ 셰이프가드
- ◆ 위생/식물위생

본 보고서는 또한 한국 기업 여행자, 학생 및 여타 미국 방문객에 대한 미국의 비자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정책은 FTA 협상의 틀 내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의 기업과 한-미 쌍무관계 전반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현재까지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원인을 해소하는 데 있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간의 활발한 접촉을 환영하며 FTA 협상이 이런 노력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한-미 FTA 협상 주요 사안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성공적인 한-미 FTA에 핵심적인 요소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조기 제거:** 우리는 미국정부가 한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모든 관세, 쿼터 및 기타 무역장벽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외 없는 포괄적 FTA:** 우리는 어떠한 상품, 서비스 또는 부문도 예외로 두지 않는 포괄적 FTA를 한국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일부 산업부문은 한국에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경험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의 틀 내에서 면밀하고 집중적인 관심과 특별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투명성:** 우리는 한-미 FTA의 틀 내에서 규제 투명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FTA에 모든 부문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및 입법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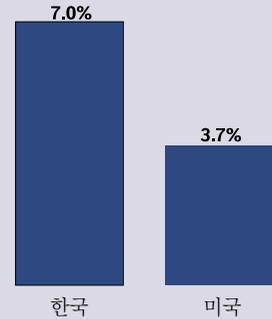
규제 절차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균등한 시장 접근성 결여는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접근 측면에서의 장벽일 것입니다.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성 관련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규 법안 재정 시, 입법예고 기간이 없거나 불합리하게 짧은 기간 설정
- ◆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
- ◆ 비정부기구에 대한 규제권한 위임으로 이해상충 및 기업 고유의 기밀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 ◆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의 서면지도 부족과 규정에 대한 일관성 없는 구두 해석
- ◆ 한국 규제당국이 한국기업 대비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 한다는 인식 확대 및 우려

투명성 개선은 규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과 한국의 기업, 투자자, 소비자가 FTA의 경제적 잠재이익을 모두 향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투명성에 관한 추가적 의문사항에 관하여 미국 FTA 협상단과 협의할 기회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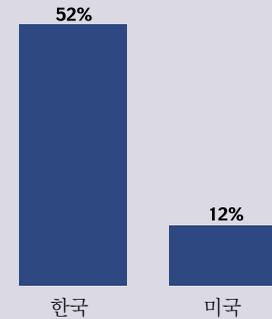
## 미국과 한국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 평균 관세율

비농산물 관세율



출처: 미국무역대표부(USTR),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 관세율



출처: 미국무역대표부(USTR), 세계무역기구(WTO)

## 한국 내 외국인 투자제한 부문

### 완전폐쇄

- ◆라디오 방송
- ◆TV 방송

### 부분폐쇄

- ◆신문 발간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간
- ◆원자력 연료 처리
- ◆전력생산(발전)
- ◆송전
- ◆기타 송전/배전
- ◆연안 해상여객 운송
- ◆연안 해상화물 운송
- ◆정기 항공운송
- ◆비정기 항공운송
- ◆전용선 서비스
- ◆유선전화 및 기타 통신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 ◆셀 방식 이동전화 서비스
- ◆기타 통신 서비스
- ◆국내 상업금융
- ◆투자신탁업
- ◆케이블 네트워크 서비스
- ◆케이블 및 기타 프로그램 판매
- ◆위성방송
- ◆통신사 활동

출처: Invest Korea, 2005년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FDI) 가이드

# 서비스

## 관련 사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 주도의 경제로 급속하게 변화해 왔으며 한국의 서비스 부문은 2004년 GDP의 62%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 중 제2대 시장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2004년에 9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43억 달러의 무역흑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몇몇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졌지만 아직 폐쇄적인 부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미 FTA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과 효율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미국기업과 한국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FTA가 모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 장벽을 제거하고 핵심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기업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으로는 금융서비스, 통신, 법률서비스, 회계,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음향 및 영상(A/V: audiovisual), 미디어 및 방송, 경영컨설팅 및 특송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될 사안

각 서비스 부문에는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 우려사항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정부에 개별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에 공통적인 몇몇 문제가 있으며 이런 문제는 한-미 FTA의 틀 내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장접근:** 한-미 FTA는 국가안보 우려사항과 직결되지 않는 모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 측면에서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FTA는 네거티브 리스트 기준으로 협상될 것이며 모든 서비스 부문은 구체적으로 개방이 유보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개방됩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한-미 FTA가 서비스의 모든 범위를 포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성:** FTA에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및 입법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진하겠다는 강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수권:** FTA에는 동 FTA가 체결된 일시를 기점으로, 현재 존재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에 대한 공개시장 접근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공평한 경쟁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음향/영상 (A/V):** FTA는 방송에 대한 외국 콘텐츠 쿼터와 외국방송 재전송에 대한 더빙과 국내 광고 제한을 제거해야 합니다. 콘텐츠와 프로그램 할당비율이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송 서비스:** FTA 하에서 한국은 특송 서비스를 특수한 서비스 부문으로 인식하고 이를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업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 서비스 부문의 국제무역의 정의를 확대하여 서비스가 어느 당사자의 영토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어느 당사자의 서비스 제공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영토로 제공하는 특송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패방지:** FTA에는 최근에 체결된 미-페루 FTA에 포함된 바와 유사한 부패방지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허용수준

육우사육업	<50%
신문 발행	<30%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	<50%
정기 항공운송	<50%
부정기 항공운송	<50%
라디오 방송	미허용
TV 방송	미허용
케이블 네트워크*	<33%
위성방송	<33%
통신사 활동	<25%

\*뉴스 프로그램 공급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허용되지 않음.

출처: Invest Korea, 2005년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가이드

# 금융서비스

## 관련 사안

한국은 미국 금융서비스 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보험시장이며 총 보험료 규모가 650억 달러 이상으로서 미국과의 FTA에 포함되는 보험시장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1997 - 1998년 외환위기 후 한국정부가 실시한 개혁은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자유화를 크게 촉진했으며 이는 외국기업의 대규모 장기투자를 한국시장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부문에서 한국정부의 지속적 개혁 노력과 국제기준과 관행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FTA를 금융서비스 부문의 추가 자유화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추가적인 개혁을 통해 투자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한국의 노력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이런 노력도 한국 금융서비스 기업의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투명성:** 한-미 FTA는 한국의 금융서비스 부분의 규제 및 입법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규제정보에 관한 균등한 접근을 촉진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FTA에는 업계가 법률안, 규정안, 수정안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통의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는 법률 시행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쟁해결:** FTA는 민원의 빈발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된 분쟁해결심판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규제당국과 산업 단체의 역할:** FTA는 한국 산업 단체에 대한 가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런 산업 단체에 규제권한이 이양될 경우 회원사들간에 이해상충이 예견되면 해당 규제권한이 이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율규제 업계 단체는 임원 선임에 있어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포괄적인 금융제도:** FTA는 한국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보다 개방적인 포괄적인 (universal) 모델의 채택을 촉진해야 하며 은행, 증권, 보험 간의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여러 개별 법률을 통합하여 증권시장 전체를 규제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가 최근에 시작한 금융서비스 개혁이 이 목표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FTA 협상 중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글로벌 모범사례 준수:** FTA는 한국의 금융서비스 부문 규제가 글로벌 모범사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제기되는 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심판제도를 재편해야 합니다. 또, FTA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사직이나 고위 관리직을 맡거나 핵심인력을 보유하는 데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하며 기업이 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어떤 언어라도 자유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시스템:** FTA에서 한국은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시스템을 시행해야 합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지지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 및 가격 통제:** FTA에는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계 보험사가 시장수요의 균형과 신중한 경영을 토대로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정부의 감독은 판매 프로세스에서 공시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환보유:** FTA하에서 한국은 외환보유 제한에서 외화표시상품을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포함한 개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 FTA에는 기업이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관행이 제공되었던 아웃소싱 및 역외에 관한 글로벌 모델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기회:** 한-미 FTA에는 한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모든 법인에게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 등이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 받고 있으면서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법규와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통신과 정보기술

##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상위 10개국

(100인 당 이용자수, 2005년 11월 기준)

1.	한국	24.9명
2.	홍콩	21.3명
3.	네덜란드	19.8명
4.	덴마크	18.9명
5.	아이슬란드	18.3명
6.	스위스	17.9명
7.	캐나다	17.7명
8.	대만	16.5명
9.	이스라엘	16.3명
10.	벨기에	15.6명

출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관련 사안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내에서 통신 부문에 대해 완전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제공하는 포괄적 접근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이며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정보통신기술 시장에서 세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시장에서 직간접 개입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기술표준 제정과 라이선스 및 조달 절차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미국업체가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을 한국시장에 도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더욱이, WTO 정보통신협정(ITA)이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ITA로 커버되지 않은 첨단 정보통신기술 상품과 가전에 대해 수입관세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한-미 FTA에는 현재 WTO ITA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품을 포함하여 모든 첨단 정보통신기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하이테크 및 통신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국제기준을 채택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내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국은 이 부문에서 더욱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의 통신 및 첨단기술 부문에서 미결된 현안을 해결하고 투자와 사업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통신 및 정보기술 부문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몇몇 주요 부문에서 진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한-미 FTA는 한국정부가 규정과 자문내용을 발간하고 새로운 규정이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규제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통신서비스 및 정보기술 부문에서 최고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한국의 표준화 기구는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에 우위를 제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술 중립성(기술선택):** FTA에는 한국이 기초 통신서비스와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모두에 대해 기술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FTA 하에서 한국은 자발적으로 국제적인 기술표준의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 및 업계가 주도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과거에 몇 가지 이유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표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FTA는 한국 통신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유선과 무선 모두 49%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한선은 중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미국의 동 부문 규제에 비해 월등히 제한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중대하고 매력적인 부문의 투자에 적용되는 이러한 규제는 경제성장을 방해합니다. 또한 첨단통신기술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지역허브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FTA는 케이블 TV 관련 SO(시스템 운영업체), NO(망 운영업체), 비뉴스/종합채널 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33%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FTA는 또 현재 종합채널과 뉴스채널에 대한 PP(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대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제거해야 합니다.

**독립적 규제기구:** FTA는 한국의 통신 및 하이테크 부문 규제기구가 공공통신 및 하이테크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정부부처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 정보통신부가 지닌 한국통신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없애거나 모든 컨버전스 문제를 총괄하는 별도의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FTA에는 기초 통신망과 서비스의 집단화 되지 않은 요소에 대해 또 한국에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통신 플랫폼에 대해 원가를 토대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FTA에는 기존 통신 플랫폼 소유주에 대한 경쟁 세이프가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초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독자적인 지위를 남용하거나 하류시장 세그먼트의 계열사에 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세:** FTA는 통신 및 하이테크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합니다. 또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HSC 제84장, 85장 및 제90장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0' 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WTO ITA에 한국이 완전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자상거래:** 과거에 체결된 미국의 FTA는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해 차별이 없는 언어를 사용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챕터:Chapte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내국민대우와 완전한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유사한 전자상거래 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농업

## 한국: 높은 수입관세 적용 상품 (2004년 기준)

상품	적용 관세
생 감자	30%
치즈	36%
사과, 포도, 배, 버찌(체리)	45%
생 토마토	45%
오렌지	50%
유장(乳漿: Whey)	50%
가금 육	18% ~ 27%
돈육, 포크 컷렛, 부산물	18% ~ 30%
과자	8% ~ 40%
쇠고기와 부산물	8% ~ 40%
견과류(피스타치오 등)	8% ~ 45%
과일주스	30% ~ 54%
탈지유 파우더	176%(쿼터 초과 시)
땅콩	231%(쿼터 초과 시)
감자 플레이크와 전분	304%(쿼터 초과 시)
사료용 옥수수	328%(쿼터 초과 시)
팍콘	630%(쿼터 초과 시)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2006년 2월

## 관련 사안

한국은 2004년에 농산물 수요의 약 70%에 해당하는 106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농산물의 제5대 시장인 한국에 25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하여 한국 농산물 수입의 약 1/4을 담당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주요 수출 농산물은 옥수수, 대두, 가공식품, 면화, 감귤류, 견과류 등이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최고 50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이런 관세와 여타 시장접근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농부, 목축업자 및 가공업체가 한국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미·한경제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FTA가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농산물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산물이 협정에서 제외된다면 한-미 FTA의 잠재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2</sup> FTA는 미국과 한국의 기업, 농민 및 목축업자에게 향상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WTO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다자간 약속을 반영하고 확장하여 체결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는 미국 농산물에 대해 실질적 시장접근이 허용되고 위생 및 식물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상된 제도가 제공되고 있는 미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 주요 선례를 따라야 합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포괄적 협정:** 한-미 FTA는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농산물 교역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관세 / 관세율 쿼터:** FTA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관세율 쿼터를 최대한 빨리 철폐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국은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bone-in beef) 수입금지를 해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원칙에 따라 쇠고기 시장을 최대한 빨리 완전 재개방할 것을 기대합니다.

**시장접근 장벽:** FTA에는 한국정부가 현재 불필요한 부담을 창출하고 있는 식품 관련 규정, 식품안전 조치, 생명공학 정책, 검사 및 통관 절차 및 상표부착 요건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비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모두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한국의 제품 및 안전기준은 한국시장에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미국업체에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FTA는 한국의 관련 규정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위생 / 식물검역 조치:** FTA는 미국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가 과학적 근거의 기반 위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004년 부문별 미국의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 (단위: 100만 달러, 현재까지 기준)



출처: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sup>2</sup> 해당 연구 제시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 관련 사안

주요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이륜자동차) 생산 및 수출국인 한국과 체결하는 FTA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한국이 선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자동차 시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과거에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개방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FTA가 자동차 수입에 대해 한국시장개방의 장애요인이 되었던 오랜 자동차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한국 수입시장 접근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보장할 특별조치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수입차에 대한 미국시장진입특혜가 제공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 자동차 부문에 오래 존치해 온 장벽으로는 관세와 자동차 세금, 표준 및 인증 절차, 수입차에 대한 지속적 반감,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불능, 환율조작 등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쌍무 자동차 협정이 두건 체결되어 비관세 장벽을 일부 해소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시키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수입차가 2005년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 시장의 2.7% - OECD 회원국 중 최저 - 만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부문에 대해 FTA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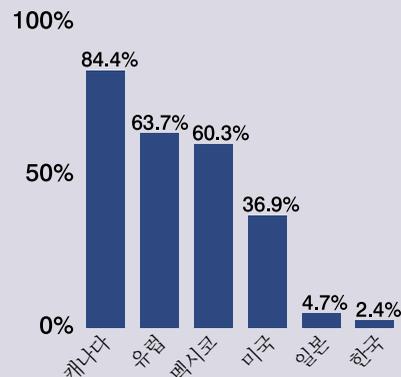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자동차의 수입과 사용을 제한하는 몇몇 주요 장벽 카테고리에서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한-미 FTA는 미국산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대한 한국측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합니다. 또 미국 자동차 업체는 미국이 양보를 하기 전에 한국 자동차 시장이 열려 있고 수입접근이 지속되고 있음을 한국이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구조:** 한국은 자동차에 대해 오래된 차별적인 세금구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1) 여러 가지 세금이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어 수입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2) 해당 세금이 8% 관세 위에 누진적으로 부과되어 관세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수입차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세금구조를 간소화하고 기존 제도의 차별적 성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세금구조를 포괄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표준 / 인증:** 한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독특한 기준과 인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중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이 이런 관행을 중단하고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입 자동차 시장점유율  
(2004년 기준)



출처: 자동차통상정책협의회(Automotive Trade Policy Council: ATPC)

미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 자동차 안전 및 배기가스 기준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한국의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FTA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규제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한국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고려하고 있을 때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업계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반감:** 과거 관행의 영향으로 현재에도 존재하는 수입차에 대한 반감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제한해 왔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로부터 FTA에서 과거 관행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추가적 약속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융서비스:** FTA 협상을 통해 자동차 생산업체에게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허용되는 자동차 관련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환율개입:** FTA에는 한국 자동차 업체에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부여하기 위해 환율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터사이클 장벽:** 한국에는 미국산 모터사이클의 판매에 대한 오래된 시장 장벽이 존재해 왔으며 이는 FTA의 맥락 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진입 금지, 소음기준, 소비자의 금융옵션을 크게 제한하는 모터사이클 소유자 명의이전 절차 미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약

## 관련 사안

한국은 세계 12위의 의약시장으로 랭크 되어 있으며 연간 의약품 판매액이 약 79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 한국정부가 의약품의 주 구매자가 됩니다.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제약사의 환경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와 급여액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의 국내 의약산업은 복제약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정부는 혁신 신약산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기존 시스템 내에서 혁신을 촉진할 인센티브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정부가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 일반약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어 국내 복제약품 산업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보건의료 당국이 새로운 비용절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요인이 작용하여 외국계 제약사가 쉬운 타깃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사업환경은 의약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기업에 수많은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FTA를 통해 이런 환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FTA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고 미국의 생명과학 의학에서 이루어진 제품혁신의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환자들에게 미국의 주요 생명과학/의학제품에 접근을 제고시킬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생명과학/제약 부분을 육성하여 첨단약품 개발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한국의 노력을 촉진하는 것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다음을 포함하여 제약 및 의료장비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주요 장벽 분야에서 진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등재 및 급여 결정 절차에서 혁신의 가치 인정:** 한-미 FTA를 통해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의약품 등재 및 급여 정책 및 절차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의약품 환급제도는 - 국민건강보험이 실질적으로 단일 구매자임 -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평가할 투명성과 분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제도적으로 혁신적 신약의 가치가 과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약가 및 급여 정책은 외국기업의 한국 내 사업확장 및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단순히 신약을 모방하는 회사에 높은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내 R&D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 혁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환자들은 환자, 외국 제약사와 연구원, 의사, 여타 이해관계자가 급여정책 입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 있는 의견을 제공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진정한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제도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의약품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과 외국의 투자자들 또한 혁신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기준:** FTA는 의약품의 급여기준과 조건을 수립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절차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신약이 승인된 경우에도 의사가 이를 처방할 수 있는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은 과학적 근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범의료사례, 한국 환자의 최선의 이익 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명성:** 한국정부의 신약 및 의약품 정책 관련 의사결정 과정은 더욱 투명해져야 합니다. 주요 정책이나 규정 변경과 관련한 투명성 결여 및 의미 있는 협의과정 부재는 미국 제약업체에 주요 우려사항입니다. 또 정부의 약가 및 급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외국기업이 독립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의적 의사결정과 제한적 책임성이라는 문제가 파생되어 왔습니다. 미·한세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FTA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척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윤리적 사업관행:** FTA를 통해 한국시장에서의 윤리적 사업관행도 다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복잡한 유통시스템 규정의 집행 미비,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 결여 등이 이러한 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 관행은 한국 환자에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품질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왜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업계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관행 준수를 통해 한국에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시스템이 강화되고, 의사 - 환자 간의 관계가 개선되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진 의료관행에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현재 한국은 WTO TRIPS 제39조 3항에 따른 사실상 매우 형식적인 수준의 배타적 자료보호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연계를 보장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FTA는 이런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료장비:** FTA는 의료기술제품과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분야의 장기 미결현안은 약가 정책의 투명성 결여 등 한국의 제약사가 한국에서 직면한 문제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FTA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품 시험 및 등록 요건과 1회용 장비의 재사용 관행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화장품

## 관련 사안

한국은 세계 4위의 화장품 및 개인미용용품 시장입니다. 2005년 기준 미국의 화장품 부문 대 한국 수출은 1억 5,800만 달러를 기록 해당 부문에서 총수출의 2.6%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업계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과 개인미용용품에 대해 8%의 관세를 적용합니다. 한국은 또 한국시장에서 미국의 매출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을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화장품 및 개인미용용품 테스트, 인증, 상표부착 및 여타 규제요건은 미국, 유럽 및 여타 주요 국제시장의 요건 대비 상당히 복잡하며 많은 부담을 초래합니다. 2000년에 한국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특수 카테고리(미백상품과 주름제거상품을 포함한 기능성화장품)를 만들어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특수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에게 전세계 어디에서도 요구되지 않는 상세한 고유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관세:** 한-미 FTA는 화장품과 개인미용용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합니다.

**투명성:** FTA는 한국 규제체계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광고제한과 규제승인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기업이 정회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역할과 책임이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합니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업의 모든 고유정보는 완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Cosmeceuticals):** FTA는 기능성 화장품에 관한 한국의 규제체계를 자유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미국, EU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은 사후검증 제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카테고리는 상당한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또 식약청에 기능성 제품을 등록하는 일정을 단축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수입통관 검토:** FTA는 이미 한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한 미국 제품명과 제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수입통관 검토의 필요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정부는 비정부 기구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입 화장품에 대해 제품성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 배송의 지연과 성분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FTA 하에서 한국정부는 다른 주요 국가의 경우와 같이 선적서류에 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품질관리 테스트: FTA는 완제품에 대해 한국만이 실시하는 중금속 함량 시험 등의 품질관리 테스트 요건을 제거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품질관리관행만을 따르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분표시: FTA는 진성분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한국이 한국 고유의 명칭 대신에 INCI(internationally accepted ingredient nomenclature)를 채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 투자

## 관련 사안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제도를 상당한 정도로 자유화시켜 왔으며, 이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지역 금융허브가 된다는 한국의 목표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특히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를 통한 직접투자는 한국에서 점점 더 환영 받고 있으며, 한국시장에서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기업도 마찬가지로 미국내 투자와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쌍무교역과 투자의 흐름을 촉진할 것이며, 한국에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더욱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회원사에 영향을 미치는 난제는 과도한 규제, 규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결여, 경직된 노동시장, 불건전한 기업지배구조 등이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 및 여타 규제사안에 관한 한국정부의 징후에 관하여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역 금융허브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정부는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FTA의 틀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와 약속은 쌍무 투자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양국에서 시장접근과 신규 투자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발전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한-미 FTA는 투자를 포트폴리오 투자, 국제투자, 장기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정의해야 하며 미국이 이전에 체결한 FTA 선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보호:** 한-미 FTA에는 공정하고 평등한 처우의 보장, 불법적 강제수용에 대한 보호, 법에 의한 공정하고 평등한 처우의 선진 기준 등 양국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쟁해결:** 투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에 관해서 FTA에는 공개된 청문회,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공개, 복잡한 부문의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 전문가 리스트, 관심 있는 제3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등 분쟁해결절차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미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액

(단위: 10억 달러, 현재가치 기준)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한국의 대 미국 직접투자액

(단위: 10억 달러, 현재가치 기준)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이행요건:** FTA는 투자의 조건으로 투자자가 일정한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 등 불공정한 이행요건을 제거하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해야 합니다.

**투명성:** FTA는 한국의 규제 프로세스, 특히 한국기업을 공개 경쟁매각 하는 경우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및 내국민대우:** FTA에는 미국 투자자의 한국투자에 대한 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하고 양국에서 투자자들에게 내국민대우를 제공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신업체, 케이블 TV 관련 SO(시스템 운영업체), NO(망 운영업체), 비뉴스/종합 채널 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33%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FTA는 또 현재 종합채널과 뉴스채널에 대한 PP(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대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제거해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 관련 사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집행은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경제발전과 성장의 관건인 혁신과 창의성을 보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시장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해적행위는 미국기업과 한국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은 한국에서 발생된 저작권 침해의 결과로 미국기업이 입은 손해를 2005년 기준 7,152만 달러로 추산한 바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를 4,150만 달러, 기업 소프트웨어의 손실을 2,560만 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sup>3</sup>

미·한계회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개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국시장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시대에 맞고 글로벌 기준과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에 한국법에 오랫동안 부족했던 강력한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고 한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미국기업에 대해 중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인터넷 협약(Internet Treaties)이 한-미 FTA의 발효일 이전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 ◆ 영화, 녹음물 등 모든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춰 95년으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FTA에는 한국이 이전에 관련 국제조항을 준수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호기간을 복원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인터넷에 만연한 해적행위 - 특히 영화 및 음악산업과 관련된 해적행위 - 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 녹음물 제작자들은 해당 작품의 디지털 배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 한국은 일시적 보호조치에 관한 WIPO 조약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한국 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무역손실 추산액 (2005년 기준) (단위: 100만 달러)

합계	\$715.2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415.1
기업용 소프트웨어	\$255.8
서적	\$43
레코드 및 음악	\$1.3

출처: 세계지적재산권협회(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

<sup>3</sup> 해당 연구 제시

- ◆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효과적 통지와 적발 절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 ◆ 일시적 복제행위에 대한 보호기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 ◆ 간행물에 대한 불법 복사와 인쇄행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 ◆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종사용자의 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 사법당국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 불법 복제물과 불법 복제물 제작에 사용된 장비에 대한 압수, 몰수 및 파괴에 대해 명확한 정부의 승인요건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 ◆ 한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또 FTA는 항구나 자유무역지대를 불법복제물 밀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에 관한 법집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 ◆ 현재 한국은 WTO TRIPS 제39조 3항에 따른 데이터 배타성 서식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연계를 보장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FTA는 의약 부문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경쟁정책

## 관련 사안

미국 업계는 지난 몇 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을 포함한 한국기업의 경쟁저해 관행에 제동을 걸지 않음에 따라 한국시장의 일부 세그먼트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기업과 재벌이 경쟁을 저해하는 관행 때문에 미국기업은 한국시장에 대한 장벽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복지 증진 또는 효율성 제고로 받아 들일 수 있는 행위를 목표로 삼아 미국기업에 대해서도 더욱 공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개입주의 정책은 특히 외국기업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런 측면에서 2006년 <국가무역 추산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 제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다음과 같은 생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미국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업활동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점금지정책을 집행하는 균형 있는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장려했다.”<sup>4</sup>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경쟁 철폐:** 한-미 FTA에는 최근에 체결된 다른 FTA에 포함된 것과 같은 높은 수준과 약속을 담은 경쟁 부문(competition chapter)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는 내국민대우, 절차적 권리와 세이프가드, 소비자 복지와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겠다는 약속 등에 관한 면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명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은 미국기업, 특히 생명과학기술, 통신, IT, 전자상거래 등 판례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시장의 역동성과 유연성이 높은 ‘신경제’ 산업에서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경쟁정책과 그 집행에 있어 특정 부문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부과된 구제수단의 근거를 포함하여 특정 거래나 행위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sup>3</sup> 미국 무역대표부(USTR), <국가무역 추산보고서: 한국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Korea>, 412페이지(2006년)

## 표준 및 기술적 무역장벽

### 관련 사안

한국의 표준 제정, 테스트 및 인증 절차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내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국제표준이 존재하고 '한국표준'을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한국에 고유한 표준을 선택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기업이 자동차, 통신,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한국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한국의 샘플링, 검사, 테스트 및 인증 절차도 국제기준을 벗어나 미국기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절차는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보호할 적절한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상세한 문서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국의 절차에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정부가 한-미 FTA를 통해 이런 특수하고 차별적인 표준과 절차를 제거하고 한국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FTA는 미국산 수출품이 한국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표준 제정, 테스트 및 인증 절차:** 한-미 FTA에는 모든 시장 부문에서 특수하고, 중복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승인 테스트와 인증절차를 제거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FTA는 또 한국정부가 어떠한 부문에서도 미국기업을 차별하는 데 표준 제정 권한이나 표준 준수 테스트 절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술 중립성의 개념을 채택하고 이를 고수해야 하며, 한국 법규에 그 범위와 의미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을 채택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투명성:** FTA는 표준 제정, 테스트 및 인증 절차에 관한 한국의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부문에서 투명한 지침을 수립, 발표 및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도출해야 합니다. 또 FTA는 새로운 규제에 관한 공개협의 절차를 충분히 가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표준: 한국은 해당 식품의 미국산 수입 품이 허용되도록 GRAS 표준을 채택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수출식품은 이 문제에 대한 혼선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승인: FTA 하에서 한국은 비농산물에 대한 사전승인 요건을 부담이 적은 국제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은 한국의 표준 제정, 테스트, 인증 및 여타 준수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고유정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 정부조달

### 관련 사안

한국은 1997년 1월 1일 정부조달에 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에 가입했으며 여러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20여 개의 정부투자기관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조달을 수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정부조달시장은 GDP의 약 12%에 해당합니다.

미국기업은 과거부터 이 부문에서 여러 문제를 겪어 왔는데, 예를 들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기술 사양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려사항은 주로 정부조달 계약서의 문구가 제약되어 있다는 데 맞춰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한책임, 지적재산 소유권, 비밀유지 등에 관한 한국정부계약의 표준조항은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기업은 한국정부 계약에 입찰을 포기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시장접근 장벽이 발생합니다. 미·한경제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에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조달 결정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과 전체적 가치를 토대로 내리는 정부조달정책에 대한 한국정보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FTA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조달계약 조항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정부계약:** 특히 무한책임, 비밀유지, 지적재산 소유권 등에 관한 한국정부계약의 표준조항은 국제기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조달용어는 판매업체의 조달 프로젝트 참가를 저해하며 이는 한-미 FTA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 일반적인 한국의 공공조달계약은 범위가 넓으며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동안 기술적 서비스의 대상 및/또는 제3자에게 가해지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또 ‘계약업체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Confidentiality)’와 ‘지적재산 소유권(IPR Ownership)’:** 지적재산 소유권에 관한 한국정부계약의 일부 조항도 우려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정부계약에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문 당사자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주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정부계약에는 비밀정보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비밀유지의 구체적 기간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계약업체가 계약의 일부로서 정부에 제공하는 비밀정보(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기술정보, 마케팅 정보 등)에 대한 인정이나 보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술 사양:** 기술 사양은 성능과 기능적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더욱이, 조달주체는 다른 당사자의 제품, 서비스 또는 공급업체에 대해 차별하는 디자인이나 제품 설명 또는 표준을 포함하여 외국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부조달 부문에서 경쟁하는 데 직접적 장벽 또는 위장된 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 사양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IT 소스코드:** 한국정부는 판매업체가 인증을 신청할 때 IT보안제품의 소스코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외국계 판매업체는 인증을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FTA 하에서 한국정부와 준정부 기구와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요건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 통관

### 관련 사안

한국의 통관절차는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에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수입통관에는 특히 농산물에 관한 까다로운 검사요건으로 인해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국 통관분류 - 미국산 수입품의 한국 입국 후 재분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것은 미국 수출업체가 한국시장에 수출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특송 서비스 산업은 배송주기가 빠른 물류, 전자상거래, 빠르게 이루어지는 글로벌 거래에 중요한 요소이며 신속한 통관은 특송 서비스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 FTA에서 이런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의 무역 및 매출 증대를 촉진할 것입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통관절차:** 한-미 FTA에는 한국의 세관 및 수입통관 절차를 가속화하고 무역에 대한 장애요소를 줄이는 통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 수입면세한도를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조정
- ◆ 검역검사 등 통관서비스를 1년 365일, 1일 24시간 제공
- ◆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적하목록(manifest) 데이터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및 관세/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항 통관 전 유연성을 확보(회계적 통관과 물리적 통관을 분리함)
- ◆ 100% 종이 없는 통관절차를 수립 및 시행
- ◆ 저가 화물의 100%에 대해 X선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 세관원에 의한 저가 화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 제거
- ◆ 항공기 부품에 관한 한국 세관의 요건을 국제 기준 및 관행(부품 사용 후 보고를 허용함)에 부합 시킴
- ◆ 원산지가 선적용 상업 송장에 표시되도록 하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출 시점에 제시할 필요가 없도록 함

**투명성:** 미국은 한국의 통관절차의 투명성에 관하여, 특히 통관 재평가에 대해 여러 부문에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런 절차와 재평가 결정은 자의적일 수 있으며 예측 가능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환경을 조성합니다. FTA는 관련 기업에서 공식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세관이 결정통지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세관의 새로운 계획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 시행 전에 기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분류:** FTA 하에서 한국의 품목분류관행은 미국산 수입품을 잘못 분류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제품의 품목분류가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 정확하게 분류된 경우 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규정

### 관련 사안

원산지 규정은 제품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FTA에는 원산지 규정이 포함되며 이는 FTA의 당사자인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만이 특혜 관세 또는 무관세 접근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준의 가공을 거쳐 다시 수출됨으로써 FTA에 의한 무관세 접근을 확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FTA에서 다룰 난제입니다. 한-미 FTA를 협상함에 있어 미국정부는 과거의 FTA에 확립된 잘 수립된 원칙을 원산지 규정 제안의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원산지 규정:** FTA에는 환적(transshipment) 및 FTA의 이익을 잠재적으로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고 FTA 무관세 대우에 부적격하거나 완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완제품에 대한 부분적 FTA 취급을 규정하는 효과적인 원산지 규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항 하에서 당사자들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내용물의 가치는 무관세 대우를 받게 됩니다.

## 노동과 환경

### 관련 사안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정부가 노동 및 환경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FTA를 협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적절한 노동여건과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런 우려사항에 관한 논의가 다자간 포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임금, 수당 및 근무규칙이 현지 스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법에 정해진 최저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를 독립적으로 취하도록 장려합니다. 한국의 장기적 경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은 지역 경제리더로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정부가 경제 관련 규정의 비행사적 위반 사항에 대한 징역형과 위반의 정도 대비 형사 처벌을 제거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 미국 비자정책

미국 비자정책은 FTA 쌍무협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양국 간의 경제 및 정치관계에 대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논하고자 합니다.

2004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 방문객 수 기준으로 한국은 상위 5개국에 속했으며, 주한미국대사관은 세계 최대의 비이민 미국비자 발급 처입니다. 사업, 관광, 유학 등을 목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들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U.S. Visa Waiver Program: VWP)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대부분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을 직접 방문 인터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교통 문제 및 비자 신청자의 장기 대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한 100개 이상의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고 미국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미국의 관광 및 접객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장기적인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사안 중에 하나가 한국을 VWP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 간의 쌍무관계에 중대한 경제 및 정치적 시사점을 가질 뿐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의 고객 등이 비자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상업적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2005년 11월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밝힌 의지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이 VWP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2007년에 생체인식 여권을 도입에 대한 최근 발표 등 한국정부가 VWP 자격을 갖추기 위해 취하고 있는 긍정적 노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비자 발급 거부율은 VWP의 핵심요건으로서 미국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3%에 대단히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노력을 통해 이 수치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FTA 협상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한국을 위한 VWP 로드맵의 수립과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와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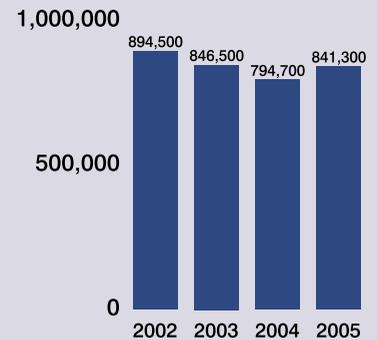
### 나라별 미국 내 외국인 학생 수 순위 (2005년 6월 기준)

순위	국가	학생수	전체 외국인 학생 대비 비율(%)
1.	한국	75,813	13.13%
2.	인도	68,976	11.95%
3.	중국	54,192	9.39%
4.	일본	50,620	8.77%
5.	대만	30,917	5.36%
6.	캐나다	28,402	4.92%
7.	멕시코	13,191	2.28%
8.	터키	11,627	2.01%
9.	태국	10,495	1.82%
10.	인도네시아	8,360	1.45%

출처: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미국 방문 한국인 수\*

(2002년 ~ 2005년)



\* 괄 포함  
출처: 대한민국 법무부

### 한국인 미국 방문의 경제효과

- ◆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체류 기간 중 총 22억 달러를 소비했으며, 1인당 평균 3,500 달러의 경제효과를 미국에 제공했다.

출처: 미국 상무부 여행 및 관광 사무소(U.S.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 of Travel & Tourism Industries)

“한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양국 모두에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및 전략적 이익이 있을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지역 참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2006년 2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2006년 1월

## 결론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상업적으로 효율적인 한-미 FTA의 체결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우리의 회원사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창출될 새로운 잠재적 거래 및 투자 기회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국 간의 FTA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한 반도와 아태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간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협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외 조건이 없는 포괄적 협상이 되어야 하며 모든 부문에서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규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정부 및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회원사들의 우선과제와 미국 및 한국의 기업, 투자자,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참조 문헌

1. U.S.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Profile of U.S. Exporting Companies, 2002-2003." Posted at:  
<http://www.census.gov/foreign-trade/aip/edbrel-0203.pdf>.
2. Choi, Inbom, and Jeffrey J. Schott.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1. pp. 55-56.
3.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2006 Special 301 Report. South Korea." p. 386 Posted at:  
<http://www.iipa.com/rbc/2006/2006SPEC301KOREA.pdf>.
4. U.S. Trade Representative.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412. Posted at:  
[http://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Reports\\_Publications/2006/2006\\_NTE\\_Report/asset\\_upload\\_file682\\_9188.pdf](http://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Reports_Publications/2006/2006_NTE_Report/asset_upload_file682_9188.pdf).

## 본 보고서에 기재된 견해는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견해로서 반드시 한국 내 카운터파트인 한미재계회의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미·한재계회의의 Sean Connell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가 작성하였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본 보고서를 작성 및 편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C&M International의 Amy Jackson과 Content First, LLC의 Michaela Platzer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Copyright 2006.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미국 의회도서관 간행물 데이터 카테고리.

아래 타이틀로 분류됨:

U.S.-Korea Business Council/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sition Paper(미·한재계회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보고서)

본 보고서의 모든 권리는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본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발행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복사, 녹화/녹음, 테이프 녹화/녹음 또는 정보 및 검색 시스템 등 그래픽, 전자적 또는 기계적 형태 또는 수단을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미·한재계회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보고서(U.S.-Korea Business Council/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sition Paper)

가격:

비회원사 \$ 30

회원사 \$ 25

주문처:

International Division, U.S. Chamber of Commerce

1615 H Street, N.W.

Washington, D.C. 20062-2000

전화: 202-463-5461

수표로 결제하실 경우, 수취인을 'U.S. Chamber of Commerce-Publications' 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와 매릴랜드주 및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판매세를 추가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해당 주제사안에 대하여 정확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행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발행인이 법률, 회계 또는 여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판매됩니다. 법률 자문이나 여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변호사협회(Committee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BA)와 미국 출판협회(Committee of Publishers and Associations)가 공동으로 채택한 원칙선언에서 발췌함.

### Content First, LLC 소개

본 보고서의 배경 리서치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종합 리서치 기관인 Content First, LLC가 수행 및 취합한 것입니다. Content First, LLC는 리서치 서비스를 각 업계 협회, 기업, 법무법인, 컨설팅업체 및 홍보 커뮤니티에 제공합니다. Content First, LLC는 정확한 리서치와 분석을 효과적 프리젠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과 접목하는 독창적 프로세스를 통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풍부한 데이터를 창출합니다.

Content First, LLC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www.contentfirst.com](http://www.contentfirst.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